경상남도공고 제2005-8호

경상남도미래산업재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미래산업재단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자치법규입법 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6일 경상남도지사

- 1. 자치 법규명 : 경상남도미래산업재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안 이유

경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미래산업재단』을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설치근거를 법령의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며 담당사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 가. 산업자원부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협약에 따라 "경남미래산업 재단설치및운영조례"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제명)
- 나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재단 명칭을 변경함 (안 제1조)
- 다. 재단 명칭을 "경남미래산업재단"에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로 변경함 (안 제2조)

- 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의 사업에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마.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참여기관이 확대함에 따라 이사 정수를 10인이상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조정함 (안 제8조)
- 바. 조례시행당시 "경남미래산업재단"이 행한 모든 행위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가 승계함을 규정 (부칙)
-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년 1월 26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미래산업과장, 전화 211-3216, 팩스 211-3219, hot@gsnd.net)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경남미래산업재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미래산업재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경남미래산업재단설치및운영조례"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 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 제1조중 "산업발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미래산업재단을 설립하고, 이의 설립·운영에"를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의운영에"로 한다.
- 제2조중 "경남미래산업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테크노파크의 조성· 운영.
- 제8조중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이사"를 "25인 이내의 이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남미래산업 재단이 행한 모든 행위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가 한 것으로 본다.

□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명
경남미래산업재단설치및운영조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산업발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미 래산업재단을 설립하고, 이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7소 및 작업기술기바 조절에과하
제2조(법인격및명칭)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명칭은 "경남미래산업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한다. 1. 지식집약형기계산업 육성 2. 생명공학산업 육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 <u><신설></u> 4. 기타 신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하 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제3조(사업) · · · · · · · · · · · · · · · · · · ·
제8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u>10인 이상</u> <u>20인 이내의 이사와</u> 감사 2인을 둔다	제8조(임원) ① · · · · · · · · · ·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경남미래산업재단이행한 모든 행위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가 한 것으로 본다.